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46
----------	-------

발의연월일 : 2026. 3. 30.

발 의 자 : 이언주 · 안태준 · 위성곤
허성무 · 민병덕 · 이광희
정진욱 · 소병훈 · 부승찬
안도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해방지의무자에게 광해방지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폐광산 광해방지사업 등에서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광해방지의무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입 비용을 구상·환수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비용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광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예방조치의 신속성 및 집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고, 부실시공·안전관리 소홀·불법 하도급 등 위반행위를 체계적으로 억제·관리할 장치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광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비용을 우선 부

담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부담한 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폐광산 등에서 광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조치명령 및 불이행 시 대집행 근거를 신설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및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부실 측정·별점 부과 및 관리체계를 도입하며, 부담금 납부기일 연기 근거를 신설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광해방지사업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10조의2·제15조의2·제24조제6항 신설 등).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광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우선 부담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선 부담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3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광해방지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산에서 광해가 발생하였거나 광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2. 그 밖에 광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광해방지의무자는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의 결과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광해방지사업의 부실 측정)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광해방지사업을 위탁받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별점을 주어야 한다.

1. 전문광해방지사업자

2.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고용된 광해방지기술인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별점을 받은 자에게 공단이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 입찰 시 그 별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별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별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준 별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별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납부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납부기일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제2항 전단 중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일(日) 단위로 산정한 가산금을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46조제2항 전단 중 “실적증명서 발급,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신청,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을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로 한다.

제4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 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부담하 여야 할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 하여 광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우선 부담 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 관은 우선 부담한 비용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 해방지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10조의2(광해방지명령 등) ①</u> <u>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폐광산에서 광해가</u> <u>발생하였거나 광해가 발생할</u> <u>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해방</u> <u>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u> <u>치를 명할 수 있다.</u> <u>1. 제12조 또는 제17조에 따른</u> <u>광해방지사업의 시행</u>

<신 설>

2. 그 밖에 광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광해방지의무자는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의 결과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제15조의2(광해방지사업의 부실 측정)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광해방지사업을 위탁받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별점을 주어야 한다.

1. 전문광해방지사업자

2.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고용된 광해방지기술인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① ~ ⑤ (생략)

<신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공단이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납부 기일을 연기할

	<u>수 있다.</u>
	<u>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u>
	<u>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u>
	<u>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납부기일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⑥ · ⑦ (생략)</u>	<u>⑦ · 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u>
제26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제26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u>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u>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 ----- ----- -----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일(日) 단위로 산정한 가산금을 징수한다.</u> ----- ----- ----- -----.

③ 채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채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 ⑥ (생략)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적증명서 발급,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신청,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합계액은 채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

제47조(벌칙) -----

-----.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명</u>
2. · 3. (생 략)	<u>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u>
	2. · 3. (현행과 같음)